

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6] <개정 2024. 1. 23.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5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
- 2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1호	300만원
나. 법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2호	300만원
다.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3호	300만원
라.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4호	300만원
마.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5호	300만원
바.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8조 제1항제6호	300만원